

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은 2007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. 개정이유

2006년 12월 30일 「지방세법」 제165조의 면허세 납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세의 납기를 「지방세법」에 맞게 개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II. 주요내용

가. 법 제1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면허세를 미리 내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로 단서규정을 신설함(안 제16조).

III. 검토의견

1. 조례 정비 배경

○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보면,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, 그 다음연도에 납부할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. 따라서 이 법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(2007. 3. 2 세제과-2664)로부터 자치구세 조례 정비안이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,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.

IV. 관계법령

● 지방세법

第29條 (納稅義務의 成立時期) ①地方稅를 납부할 義務는 다음 各號의 時期에 成立한다. <개정 1999.12.28, 2000.12.29, 2001.4.7, 2001.12.29, 2005.1.5, 2005.12.31, 2006.12.30>

3. 免許稅 : 各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

제165조 (신고납부 등) ①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소재지 또는 주소지(이하 이 절에서 "납세지"라 한다)를 관할하는 시·군에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, 그 다음연도에 납부할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2.30>

1. 당해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: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
2. 당해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: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

②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. <신설 2006.12.30>

[전문개정 2000.12.29]